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0. ~ 4.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인천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서울세관장 · 부산세관장 · 대구세관장”을 “서울세관장 · 부산세관장 · 인천세관장 · 대구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서울세관 통관국장 · 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 통관정보과 · 물류감시1과 · 물류감시2과 · 통관검사1과 · 통관검사2과 · 통관검사3과 · 장비관리과 · 전산정보관리과 ·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 및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우편통관국에 특송우편총괄과 · 특송통관1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3과 ·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제11조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통관정보과·물류감시1과·물류감시2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과·통관검사3과·통관검사4과·통관검사5과·신항통관과·여행자통관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을,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명·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자유무역협정검증2과·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제11조제12항 본문 중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관”을 “과장·담당관·조사관·검사관”으로,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관운영과장·항만수출입물류과장·항만통관정보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항만물류감시1과장·항만통관검사1과장·공항수출입물류과장·공항통관정보과장·공항물류감시1과장·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여행자통관1과장·공항여행자통관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항만여행자통관과장·특송통관1과·심사총괄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괄과장·마약조사1과장”을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물류과장·통관정보과장·여행자통관1과장·여행자통관2과장·특송우편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마약조사1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3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환조사과장”을 “외환조사과장, 인천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통관정보과장·여행자통관과장·심사총괄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조사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

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제12조제3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⑨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항 및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⑬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⑮ 특송우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⑯ 특송통관1과장·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⑰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⑱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⑲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⑳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㉑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⑧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⑨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⑩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⑫ 심사관은 제1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⑬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⑭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 및 제2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제15조제19항”을 “제14조제15항”으로, “사항”을 “사항(특급택송물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01”를 각각 “4,799”로 하고, 서기관 “36”을 “35”로 하며, 관세서기보 “773”을 “77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11”를 각각 “4,809”로 하고, 서기관 “36”을 “35”로 하며, 관세서기보 “730”을 “729”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2) 조직란 2) 중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하고, 같은 목 4) 조직란 4) 중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2. 서울세관장 · 안양세관장 · 천안세관장 · 청주세관장 · 성남세관장 · 파주세관장 · 속초세관장 · 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 · 김해공항세관장 · 용당세관장 · 양산세관장 · 창원세관장 · 마산세관장 · 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인천세관장 · 평택세관장 · 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5. 대구세관장 · 울산세관장 · 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6. 광주세관장 · 광양세관장 · 목포세관장 · 여수세관장 · 군산세관장 · 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별지>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항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서동·운북동·중산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 항동(인천해상교환국에 한정한다)
서울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 및 안양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
부산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용당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웅천동·웅동1동·웅동2동에 한정한다)
인천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공항세관·김포공항세관 및 안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대구세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세관 및 구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광주세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에 한정한다)
김포공항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한다)
수원세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안산세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 는 제외한다)·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김포시(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안양세관	경기도 의왕시	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양천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 석문면, 대호지면 및 고대면은 제외한다)
청주세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여주시·가평군·양평군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김해공항세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용당세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남구·수영구(해상과 부두는 제외한다)·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은 제외한다)·북구·사상구, 경남 양산시(부산국제우체국에 한정한다)
양산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삼동면 조일리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성산구(마산항 부두는 제외한다)·김해시·밀양시
마산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함안군
경남남부세관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하이면은 제외한다)
경남서부세관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하동군(금성면은 제외한다)·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합천군(대구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창녕군·의령군·남해군·고성군 하이면
울산세관	울 산	울산광역시(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광역시	
구미세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의성군,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약목면, 북삼읍, 석적읍에 한정한다)
포항세관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
속초세관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동해세관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광양세관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에 한정한다)
목포세관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무안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대전세관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세관, 평택세관 및 군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여수세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군산세관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제주세관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세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세관) ① 인천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세관) ① 인천공항세관장 ----- ----- ----- 서 울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 ----- ----- ----- -----. ----- ----- ----- ----- ----- ----- ----- ----- ----- ----- ----- ----- -----.
② 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	② -----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 통관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통관감시국에 항만수출입물류과·항만통관정보과·항만물류감시1과·항만물류감시2과·항만통관검사1과·항만통관검사2과·항만통관검사3과·항만통관검사4과·항만통관검사5과 및 신항통관과를, 공항통관감시국에 공항수출입물류과·공항통관정보과·공항물류감시1과·공항물류감시2과·공항통관검사1과·공항통관검사2과·공항통관검사3과·장비관리과 및 전산정보관리과를, 여행자통관1국에 공항여행자통관1과,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9명, 여행자

-----.
-- 서울세관 통관국장·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

--.

③ 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통관정보과·물류감시1과·물류감시2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과·통관검사3과·장비관리과·전산정보관리과·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 및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우편통관국에 특송우편총괄과·특송통관1과·특송통관2과·특송통관3과·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

정보분석과, 항만여행자통관과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을, 여
행자통관2국에 공항여행자통관
2과 및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7
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
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3과
및 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
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
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
2과, 심사정보1과, 심사정보2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6명, 조사정
보과,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
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④ · ⑤ (생략)

<신설>

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
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
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
입물류과 · 통관정보과 · 물류감
시1과 · 물류감시2과 · 통관검사
1과 · 통관검사2과 · 통관검사3
과 · 통관검사4과 · 통관검사5과
· 신항통관과 · 여행자통관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을, 심사국
에 심사총괄과 · 심사관 3명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 자유무

⑥ ~ ⑩ (생략)

⑪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둔다.

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항만수출입물류과장·항만통관정보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항만물류감시1과장·항만통관검사1과장·공항수출입물류과장·공항통관정보과장·공항물류감시1과장·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여행자통관1과장·공항여행자통관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항만여행자통관과장·특송통

역협정검증2과·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조사관 3명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⑦ ~ ⑪ (현행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삭제>

⑫ -----과장·담당관·조사관·검사관-----

-----또는-----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물류과장·통관정보과장·여행자통관1과장·여행자통관2과장·특송우편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마약조사1과장-----

관1과 · 심사총괄과장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 조사총괄과장 · 마약조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⑬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 · 담당관 · 심사관 · 조사관 · 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 · 통관검

-----.

⑬ ----- 제9항-----

-----.

사1과장 · 이산화물과장 · 심사
 총괄1과장 · 심사총괄2과장 · 체
 납관리과장 · 자유무역협정검증
 1과장 · 조사총괄과장 · 특수조
 사과장 · 외환조사총괄과장 및
 외환검사과장, 부산세관의 통관
 총괄과장 · 통관검사1과장 · 수
 출입물류과장 · 물류감시과장 ·
 신항통관감시과장 · 신항통관검
 사1과장 · 심사총괄과장 · 자유
 무역협정검증과장 · 조사총괄과
 장 및 외환조사과장, 대구세관
 · 광주세관 · 울산세관의 통관
 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
 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
 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
 로, 평택세관의 물류감시과장
 및 울산세관의 감시과장은 행정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장비관리
 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
 센터장은 서기관 · 행정사무관

---- 외환조사과장, 인천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 · 통관정보과장
· 여행자통관과장 · 심사총괄과
장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조사총괄과장-----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전세관·용당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신 설>

-----.

⑭ 제10항-----

-----.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

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
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
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제
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
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
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제12
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
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⑨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항 및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⑬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2항

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⑭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⑮ 특송우편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
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
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
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
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6. 특급택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
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택송
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 특급택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
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
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
· 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 ⑯ 특송통관1과장·특송통관2
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
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
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
장한다.
- ⑰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
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
지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
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⑱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

항 · 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 · 출항하는 공항 ·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용 및 관리

⑪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을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 · 출항하는 공항 ·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용 및 관리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항만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②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만통관정보과장은 항만통관에 관한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항만물류감시1과장 및 항만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항만통관검사1과장 · 항만통관검사2과장 · 항만통관검사3과장 · 항만통관검사4과장 및 항만통관검사5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⑨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공항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 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 · 통관검사2과장 · 통관검사3과장 · 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⑩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⑪ 공항통관정보과장은 공항통

관에 관한 제12조제5항제2호부

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

다.

⑫ 공항물류감시1과장 및 공항

물류감시2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

장한다.

⑬ 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통

관검사2과장 및 공항통관검사3

과장은 제8항의 사항 중 관세청

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

장한다.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심사관은 제1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

한다.

⑬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

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

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⑭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⑮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공항여행자통관1과장·공항여행자통관2과장 및 항만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⑰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⑱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 및 제2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⑬ 특송통관1과장·특송통관2과장·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통관4과장은 다음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

<삭 제>

<u>물품에 대한 구매예정가격의 산출</u>	
<u>8. 특급택송물품의 세관별 수입</u> <u>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u> <u>그 운영</u>	
<u>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u> <u>행능력 평가 등 관리</u>	
<u>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u> <u>· 관리에 관한 사항</u>	
<u>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u> <u>및 과태료 처분</u>	
<u>㉔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u> <u>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u>㉕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u> <u>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u><22>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u> <u>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u> <u>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u> <u>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u> <u>각 분장한다.</u>	<u><삭 제></u>
<u><23> 심사정보1과장은 제12조</u> <u>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u> <u>다.</u>	<u><삭 제></u>
<u><24> 심사정보2과장은 제12조</u> <u>제1항제20호 및 이 조 제20항·</u> <u>제23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u>	<u><삭 제></u>

<u>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u>	
<u><25>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u>	<u><삭 제></u>
<u>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u><26> 분석관은 제25항의 사항</u>	<u><삭 제></u>
<u>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u>	
<u>분장한다.</u>	
<u><27>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u>	<u><삭 제></u>
<u>제23항 각 호 및 제25항 각 호</u>	
<u>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u>	
<u>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u>	
<u>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u>	
<u>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u>	
<u>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u>	
<u>·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u>	
<u>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하</u>	
<u>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u>	
<u>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u>	
<u>용 및 관리</u>	
<u><28> 조사관은 제27항 각 호</u>	<u><삭 제></u>
<u>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u>	
<u>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u>	
<u>다.</u>	
<u><29>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u>	<u><삭 제></u>
<u>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u>	
<u>다.</u>	
<u><30>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u>	<u><삭 제></u>

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
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
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하
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
용 및 관리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
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
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
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
한다)

<31>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
사3과장은 제30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
무분장) ①·② (생략)

③ 특송통관과장은 제15조제19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⑦ (생략)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삭 제>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
무분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4조제15항
----- 사항(특급택송물품
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④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과단위 사무분장) ① 우편통관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
장한다.

1.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이하 이 조에
서 “소액물품”이라 한다) 외의
물품에 대한 제12조제19항제1
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2. 제18조제1항의 사항

② 우편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8조제2항의 사항(제1항제
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3항의 사항

신 · 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801</u>		<u>4,799</u>	-2	
일반직	계		<u>4,801</u>		<u>4,799</u>	-2	
	.		.		.		
	.		.		.		
서기관			<u>36</u>		<u>35</u>	-1	
	.		.		.		
	.		.		.		
관세서기보			<u>773</u>		<u>772</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4,811</u>		<u>4,809</u>	-2	
일반직	계		<u>4,811</u>		<u>4,809</u>	-2	
			•		•		
			•		•		
서기관			<u>36</u>		<u>35</u>	-1	
			•		•		
			•		•		
관세서기보			<u>730</u>		<u>729</u>	-1	
			•		•		
			•		•		